

2010.09.20 미래정책연구실

※ 본 자료는 농림수산물에서 9월 15일 발표한 “종자산업법 개정안 시행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.

□ 개요

- 전자출원제도 신설
 - 인터넷 신청·등록 가능
- 출원공고제도 폐지
 - 신제품 조기 확산 촉진
- 품종명칭 등록 시 제한 법규 완화
 - 육성자의 품종명칭 선택의 폭 확대
- 품종보호권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제도 도입
 - 소송에 따른 비용절감, 처리 기간 단축
- 유통종자의 표시단위 변경

□ 주요내용

○ 전자출원제도 도입(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신설)

- (현행) 출원인이 문서, 사진 등을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하여 제출 하도록 하고 있어 출원인의 불편 초래
- (개정)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품종보호 출원서나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 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.
- (효과) 전자출원제도 도입으로 문서를 간소화하고, 전자정부 실현

으로 정보의 신속한 전달 등 효율성의 향상 및 출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○ 출원공고제도 폐지(현행 제30조,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38조 및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삭제)

- (현행) 출원공고는 심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나 출원공고 제도 시행 이후 이의신청이 1건밖에 없는 등 실효성이 없었고 이로 인하여 심사 기간이 60일 이상 지연되어 품종보호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.
- (개정)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출원공고제도를 폐지하고 출원공고와 관련된 이의신청, 직권에 의한 거절사정 등 관련 조항도 폐지함. 폐지 발육상태에 따른 적정 사료량 급여로 사료 효율 제고
- (효과) 출원공고제도 폐지에 따라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출원인의 권리행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제품의 조기 보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.

○ 품종보호권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제도 도입(안 제93조)

- (현행) 현행 규정은 거절사정 및 품종보호 무효 결정에 한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하나, 품종보호권 취소결정의 경우도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심판청구제도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음.
- (개정) 품종보호권이 취소된 경우에도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심판 청구를 하도록 함.
- (효과) 품종보호권이 취소 처분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여야 하나 취소심판청구를 통한 구제수단을 마련함에 따라 소송에 따른 비용절감과 처리기간 단축이 기대됨.

○ 분쟁종자 대비시험 신청제도 개선(안 제14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)

- (현행) 분쟁종자 대비시험을 위해서는 분쟁당사자가 종자시료 제출에 동의하여야 하나,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시험용 시료의 제출이

불가능하여 대비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.

- (개정) 분쟁당사자가 종자시료 제출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대비시험 실시를 위하여 **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시료채취를 신청**할 수 있도록 함.
- (효과) 분쟁당사자가 종자시료 제출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시료채취를 대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공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.
- 국별 출하제중(kg) : 한국 1.5, 일본 2.7, 중국 2.5, 미국 2.1

○ 종자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 권한 부여(안 제158조의6 신설)

- (현행)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출석이나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, 조정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어 조정의 실효성이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.
- (개정)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종자위원회가 재배시험 등을 실시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도록 함.
- (효과) 종자위원회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직권으로 조정결정을 실시하게 되므로 조정의 실효성 제고 및 신속한 분쟁 해결을 통한 육성자 권리 강화 효과가 기대됨.

주간농업·농촌동향 **농지연금 시행**

※ 본 자료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9월 13일 발표한 “농지연금 시행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.

□ 농지연금 상품모형

○ 연금 지급 예시

- 70세 농업인이 2억 원 상당의 논(1ha)을 담보로 농지연금 가입
- 연금액: 76만 원/월(사망시 까지)
- 담보로 제공한 농지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어 연금이외 수입도 올릴 수 있음.
- ※ 벼를 직접 경작할 경우: 약 45만 원/월
- ※ 임대할 경우: 약 19만 원/월

○ 추후 일정

- 금년 11월 : 상품모형 설계, 운영시스템 구축 완료
- 내년 1월 : 시행(농지은행 접수)

□ 농지연금의 지원기준

○ 지원대상 농업인 요건

- 부부 모두 65세이상, 영농경력 5년이상, 소유농지 총면적이 3만㎡이하

○ 지원절차

- 지원신청 → 지원대상자 결정 → 담보농지 제공 → 약정체결 → 담보농지에 저당권설정 → 농지연금 지급

○ 지급방식 :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(종신형), 일정기간 매월 지급(기간형)

○ 가입비와 위험부담금 징수

- 가입후 중도이탈방지, 농지가격하락·이자율상승·수명 연장 등으로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보전 목적(가입자에게서 징수)
- 가입비는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2 이내에서 장관이 결정
- 위험부담금은 농지연금채권의 연 100분의2 이내에서 장관이 결정

○ 담보농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제한

- 담보농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

□ **농지연금의 사무관리**

○ 농지연금 지급정지 및 지급금 회수

-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등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연금지급을 정지하고, 그 담보농지를 처분하여 정산 및 지급금 회수

○ 농지연금채권 행사범위

- 채권행사는 원칙적으로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가능
- 다만, 제한적으로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채권행사 가능(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·임금채권 등의 사유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)